

서울특별시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조례안

(이영실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2761
----------	------

발 의 년 월 일: 2025년 05월 26일

발 의 자: 이영실, 강석주, 김성준,
박승진, 박춘선, 박철성,
봉양순, 송도호, 오금란,
유정희, 이용균, 이원형,
이종태, 임종국, 정준호,
최기찬, 최재란, 홍국표
의원(18명)

1. 제안이유

- 최근 서울시에서 이륜자동차 이용이 급증함에 따라 이에 따른 소음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불법 개조 및 야간 소음으로 시민 생활환경 침해가 심각해져 이륜자동차 소음의 체계적인 관리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 또한 현행 법령은 국가 차원의 일반적인 소음 관리 규정을 포함하고 있으나, 서울시의 특수한 도시 환경과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실질적인 소음 저감 대책을 마련하는 데 한계가 있어 서울시 차원의 종합적인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체계 구축이 절실한 상황임.
- 이에 본 조례는 소음 관리 기본체계 확립 및 관리계획 수립, 실무협의체 운영을 통한 협력 강화, 교육 및 행정·재정적 지원 등 다각적인 조치를 통해 이륜자동차 소음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안 제1조).
- 나.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기본체계 확립(안 제2조~제4조).
- 다.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안 제5조).

- 라.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실무협의체 운영(안 제6조).
- 마. 교육 및 지원(안 제7조).
- 바. 홍보사업 운영(안 제8조).
- 사. 행정·재정적 지원(안 제9조).
- 아. 표창제도 도입(안 제10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소음·진동관리법」, 「도로교통법」, 「서울특별시 소음·진동 관리에 관한 조례」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별첨)
- 다. 기타 : 신 구조문 대비표 참조

서울특별시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음·진동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이륜자동차 운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시민의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륜자동차”란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의 크기와 관계없이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 및 그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를 말한다.
2. “운행”이란 사람 또는 화물의 운송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를 그 용법(用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3. “소음”이란 이륜자동차의 원동기, 배기장치 또는 기타 부속장치의 작동에 따라 발생하는 음향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생활환경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소리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서울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및 피해예방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이륜자동차 소음피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가 추진하는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이륜자동차 소음피해를 방지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에 관한 기본정책
2. 자치구 연도별 이륜자동차 소음 저감대책 추진현황
3. 이륜자동차 소음 점검을 위한 시와 자치구 협력에 관한 사항
4.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실무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이륜자동차 소음 저감대책을 추진하기 위한 교육 및 홍보계획
6. 관리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경비의 산정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관리계획 수립과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구청장에게 이륜차 소음 관리 추진실적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실무협의체 구성·운영) ① 시장은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협의체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륜자동차 소음 단속 및 점검 계획 수립 지원
2. 이륜자동차 소음 관련 기술적·정책적 분석 및 자문
3. 불법 개조 이륜자동차 단속을 위한 대책 수립
4. 이륜자동차 이용자 대상 소음 저감 협력 방안 논의
5. 이륜자동차 소음 저감 대책의 효과 분석 및 개선 방안 제안
6. 그 밖에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논의

③ 실무협의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시 및 자치구의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담당 공무원
2. 서울경찰청 및 자치경찰위원회 교통담당자
3. 교통 관련 전문기관 소음측정 담당자

4. 도로교통 및 자동차 소음 관련 분야에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실무협의체에 출석한 구성원에게는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실무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실무협의체의 회의를 거쳐 운영세칙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교육 및 지원) ① 시장은 시 및 자치구의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교육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홍보사업) 시장은 이륜자동차 소음 저감을 위한 대시민 홍보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9조(재정지원 등) 시장은 이륜자동차 소음 점검을 시행하는 자치구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표창 등) 시장은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에 기여한 개인·단체, 관계기관 등에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조례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조례는 제6조(실무협의체 구성·운영), 제7조(교육 및 지원), 제8조(홍보사업), 제9조(재정지원 등) 및 제10조(포상 등)를 신설함에 따라 관련 비용 발생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

3.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제3조제2항)
 - 서울특별시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조례는 제6조(실무협의체 구성·운영), 제7조(교육 및 지원), 제8조(홍보사업), 제9조(재정지원 등) 및 제10조(포상 등)를 신설함에 따라 관련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사업의 지원대상 및 규모 등이 구체적이지 않아 현 시점에서 기술적으로 추계하기 어려움. 다만, 타 지자체(경기도)의 사례가 있어 참고자료로 제시함(붙임1)

4.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

담 당 관 주병준

추계세제팀장 김중헌

추계분석관 김지혜

☎ 02-2180-7952

e-mail : kjh0123@seoul.go.kr

경기도, 음향영상카메라 도입 등 배달 오토바이 소음 관리 추진

- 전국 최초로 '이륜차 소음관리 종합계획' 수립

- 배달문화 확산에 따라 증가하는 이륜차 소음관리를 위해 경기도 5개년 계획 수립
 - 소음관리체계 선진화, 소음피해 사전예방 등 4개분야 12개 중점과제 선정
- 음향영상카메라 도입, 후방카메라 활용 등 과학적 단속체계 마련 및 실무협의체를 통한 협업 체계 구축

경기도가 배달용 이륜자동차 소음으로 불편을 겪는 도민을 위해 음향영상카메라를 도입해 실시간으로 소음을 측정하고, 소음이 없는 전기 이륜자동차를 보급하는 등 12개 과제를 추진한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이륜자동차 소음관리계획(2025~2029)'을 전국 최초로 수립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전국 최초로 제정된 '경기도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조례' 제5조에 근거해 마련됐다.

계획안을 살펴보면 도는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총 224억 원을 투자해 '정온한 생활환경 조성을 통한 도민 행복 실현'을 비전으로 내세웠다. 이를 위해 이륜자동차 소음관리체계 선진화, 소음 피해 사전 예방, 소음 사후관리 강화, 소음정책 역량 강화 등 4개 분야, 12개 중점과제를 설정했다.

우선 소음관리체계 선진화를 위해 음향·영상카메라를 설치해 올해부터 매년 5곳씩 5년간 총 25곳에 시범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존에는 오토바이 소음에 대해 수동으로 단속하는 방식이라서 단속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도로 위 속도위반 카메라처럼 음향·영상카메라가 있으면 오토바이 소음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단속에 활용할 수 있다.

이어 소음 관리체계 선진화 과제로 사물인터넷(IoT)을 기반으로 한 실시간 소음 측정 시스템 도입, 후면 단속카메라 설치 확대도 추진한다.

이 밖에도 소음 피해 사전 예방을 위해 전기 이륜자동차를 5년간 1만 대 보급, 주거지역과 병원 주변 등을 고려한 이동소음 규제지역 확대, 배달앱 플랫폼과 협력해 불법 개조한 이륜자동차의 배달 앱 사용 제한 등의 내용을 담았다.

박대근 환경보건안전과장은 "이번 계획을 통해 이륜자동차 소음 문제를 체계적으로 해결하고, 도민들에게 보다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비전 및 목표

비전

정온한 생활환경 조성을 통한 도민 행복 실현

목표

도민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정책 만족도 60% 달성

핵심분야(4개)

중점과제(12개)

**①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체계 선진화**

- ①-1. 음향·영상카메라 활용 소음 단속 고도화
- ①-2. 사물인터넷(IoT)을 접목한 소음 실시간 측정
- ①-3. 후면 단속카메라 설치 확대

**② 이륜자동차 소음
피해 사전예방**

- ②-1. 이륜자동차 소음관리기준 합리적 개선
- ②-2. 엔진소음없는 전기 이륜자동차 보급
- ②-3. 이륜자동차 소음검사 주기 단축

**③ 이륜자동차
소음사후관리
강화**

- ③-1. 이륜자동차 이동소음 규제지역 확대
- ③-2. 이륜자동차 소음 단속 강화
- ③-3. 불법개조 이륜자동차 배달 앱 사용제한 및 점검강화

**④ 이륜자동차 소음
정책 역량 강화 및
홍보**

- ④-1. 이륜자동차 소음관리 실무협의체 구성·운영
- ④-2.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교육 강화
- ④-3. 소음관리 대국민 체감도 제고(홍보)